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은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37
----------	------

발의연월일 : 2024. 1. 8.

발의의원 : 양은숙 의원, 김보경 의원,
이연숙 의원

1. 제안이유

동물보호에 관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위해 동물보호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나. 동물보호관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5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를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를 “법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조”를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5조 및 제36조”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 행위”를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 행위”로 한다.

제3조의 제목 “(군수의 책무)”를 “(군수 및 군민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립함에 있어”를 “수립하는 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법 제12조제4항”을 “법 제15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

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10조제3항”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15조제1항”을 “규칙 제16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신청을 접수할”을 “신청받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발생두수”를 “발생마릿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1항”을 “규칙 제16조”로, “규칙 제19조”를 “규칙 제20조”로, “규칙 제15조제4항”을 “규칙 제21조제3항”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조치를 하여야”를 “조치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7조제1항”을 “영 제16조”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6호”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12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를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부상당한”을 “다친”으로, “공수의로 하여금”을 “공수이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 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및 제46조”로, “분양을 하는”을 “분양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등록이 되어”를 “등록되어”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고, 같은 항 제1

호 중 “시행령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제11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우선적으로”를 “먼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43조”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분양을 하는”을 “분양하는”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소요된”을 “든”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요된 경비”를 “든 경비”로, “소요된 비용”을 “든 비용”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39조”를 “법 제86조”로,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때에는”을 “때는”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16조(중전의 제15조)제1항 중 “법 제41조”를 “법 제90조”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17조(중전의 제16조)제1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중전의 제15조에 따라 위촉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명예동물보호관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조례」 제17조 각 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및 「대구광역시 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20조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생 략) 3.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등 동물”이라 한다)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그 이외의	제2조(정의) ----- -----. 1. 2. (현행과 같음) 3. ----- ----- 법 제2조제1호----- ----- ----- -----. 4. ----- ----- 제4조----- ----- -----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월령(月齡)이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

5. (생략)

6.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등 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거나, 군수가 지정하여 유기등 동물 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 9. (생략)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행위를 당한 동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생략)

② 군수는 동물보호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

5. (현행과 같음)

6. -----
----- 법 제35조 및 제36조-----

-----.

7. ~ 9. (현행과 같음)

10. ----- 법 제10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 행위-----
-----.

제3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수립하는 데 -----.

③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 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민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한 군수의 시책에 적극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등록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이하 “무선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인식표를 장착 후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하며, 등록대상동물이 등록된 날부터 6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군수는 등록대행자의 지정,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① -

-----, -----
- 법 제15조제4항-----

-----.

② -----
-----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 영 제10조제3항-----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③ (현행과 같음)

④ -----

대해서는-----
-----.

제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 중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

1. ~ 3. (생략)

4.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시설

④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등 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생략)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군수는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관

등) ① ---- 법 제35조제1항-----

-----.

② -----
----- 법 제36조-----

-----.

③ -----

--- 규칙 제16조-----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6조-----

④ -----
---- 때는 -----
----- 신청받을 -----
-----.

⑤ -----
----- 발생마
릿수-----
-----.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

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15조제1항 별표4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및 규
 칙 제19조 별표5에 따른 동물보
 호센터의 준수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
 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7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생
 략)

② 군수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등 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
 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군
 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기등
 동물 등을 구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리시스템에 규칙 별지 제6호 서
 식의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
 여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군수

----- 규칙 제1
 6조 -----

----- 규칙 제20-----

 -----.

② ----- 법 제36
 조제4항 -----

 -----.

제7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현
 행과 같음)

② -----
 ----- 때는 -----

 -- 조치하여야 -----.

제8조(보호동물의 공고 등) ① ---

 ----- 영 제16조-----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규
 칙 별지 제12호 -----

 ---.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동물보호 및 관리) ① -----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유기 등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유기등 동물 보호 담당자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1. 2. (생 략)

② 군수는 구조한 유기등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보호조치를 하기 전에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생 략)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기등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 법 제34조-----

-----.

1. 2. (현행과 같음)

② -----
----- 다친 -----

----- 공수
의가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86
조제1항제3호-----
-----.

제10조(동물의 반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법 제45
조 및 제46조-----

동물을 애호하는 자에게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기등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 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⑤ 법 제21조의 “동물을 애호하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법 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법 제41조에 따른 동물보호명예감시원
3. (생 략)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 분양하는 -----

-.

④ -----

-등록되어 -----

--.

⑤ 법 제45조-----

-.

1. 영 제6조-----

2. 법 제88조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3. (현행과 같음)

제11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② -----

영 제6조-----

하도록 하고,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군으로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이 조례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유기등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소유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 분양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소요된 경비와 중성화 수술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 수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7일 이내에 치료보호 후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여름철(6월~

----- 법 제45조-----

----- 먼저 -----
-----.

③ 법 제43조-----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분양하는 --
-----.

제12조(소요경비의 징수) ① ----

----- 든 ----

-----.

② -----

----- 든 경비-----
----- 든 비용-----
--.

제13조(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

-----.

② -----

-----.

8월), 겨울철(12월~2월)의 길고양이 중성화를 위한 포획 및 수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리 및 중성화 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14조(출입·검사 등) ① 군수는 필요한 때에는 법 제39조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 사육·관리·보호자,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영업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 또는 군 소식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신 설>

-----.

③ -----

----- 드는 -----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출입·검사 등) ① -----
----- 법 제86조-----

법 제69조제1항 각 호 및 제73조제1항 -----

-----.

② -----

----- 때
는 -----

-----.

제15조(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제15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동물의 학대방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감시원은 동물보호 활동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명예감시원에게 명예감시원 신분증이나 그 밖의 신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조끼, 완장 등)가 되는 것들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명예감시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6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군수는 유기등 동물의 구조·보호 및 동물등록 등이 원활히 수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명예동물보호관) ① -----

--- 법 제90조-----

----- 명예동물보호관 -----

-----.

② ----- 명예동물보호관-----

-----.

③ ---- 명예동물보호관에게 명예동물보호관 -----

-----.

④ 명예동물보호관-----

-----.

제17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행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나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에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7조(수수료의 감면) 군수는 다
 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다.

1.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 견을 등록하
 는 경우 : 전액

2. ~ 4. (생 략)

제18조 · 제19조 (생 략)

----- 영 제6조-----

 -----.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수료의 감면) -----

 --. -----
 -----.

1.-----

2. ~ 4. (현행과 같음)

제19조 · 제20조 (현행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음)

□ 「동물보호법(법률)」(2024. 1. 2. 일부개정, 2025. 1. 3. 시행)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 등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물의 몸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 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물이나 음식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라.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는 행위
2. 포획하여 죽이는 행위
3.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4.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절한 길이의 목줄, 위생·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3.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선전하는 행위.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3. 도박·시합·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4.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건의 대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8조(동물보호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이하 “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임명,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누구든지 동물의 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